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시행세칙

부천도시공사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18.05.04. 세칙 제27호

개정 2021.04.23. 세칙 제64호

개정 2019.11.05. 세칙 제51호

(타)개정 2021.07.01. 세칙 제65호

(타)개정 2020.09.18. 세칙 제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부천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②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의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부패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접수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협조사항 안내문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4.23.>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1.04.23.>

⑥ 익명으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4.23.>

⑦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감독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4.23.>
-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04.23.>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23.]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본조신설 2021.04.23.]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04.23.>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업무 미부여 등의 인사조치
4. 근무성적평정의 차별 등에 따른 임금·평가급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신분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세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사장은 전보,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 인사 조치에 있어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사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장의 요구에 불응한 자
-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신고자 보상 등) ① 사장은 신고로 인하여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사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사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공사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패발생 방지대책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20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부패신고자 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본조신설 2021.04.23.]

제21조(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본 부장과 인사담당 부서의 장, 해당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9.11.05., 2021.07.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세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 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09.18.]

제22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지급기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지급기준 별표 1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신고자가 있거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신고 경합시 보상금 처리)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제24조(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신고 사항
3. 감사원,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보상을 목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②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임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상금 등의 지급방법) 포상금 및 보상금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포상 및 보상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상금의 환수) 공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장 보칙

제2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세칙 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세칙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2018.05.04. 세칙 제27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5. 세칙 제51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 14개 세칙
일부개정을 위한 세칙>

(2020.09.18. 세칙 제59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23. 세칙 제64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세칙>

(2021.07.01. 세칙 제65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별표 1]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지급기준(제22조 관련)

1. 포상금

행위구분	지급기준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진신고 포함)	- 수수금액의 20퍼센트 이내
부패행위자 징계 처분시	- 중징계 : 100만원 - 경징계 : 50만원
제19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2.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10퍼센트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4%
1억원 초과	- 5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3. 기타사항

가.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나.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신고서(제6조제2항 관련)

부패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직 급	
	소 속			
신고의 경위 등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증거자료명				
「부패행위 및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신고제도 운영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2021.04.23.>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2021.04.23.>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범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속)			전화번호	
	주소				
부패행위신고사항	부패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패발생부서	부서명		소재지	
	부패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신고내용 (요약)				
조사결과	결과통지서	발송일자		발송번호	
	통지내용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금액			지급방법		
「부패행위 및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신고제도 운영 시행세칙」 제22조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